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. 10. 27 선고 2015가단67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0. 13.

판결 선고 2015. 10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647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이동식 컨테이너 15m²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이동식 컨테이너 15m를 각 수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조형우

별지